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6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신장식·김선민·박은정
김준형·서왕진·강경숙
황운하·차규근·이해민
최혁진·정춘생·백선희
김재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

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를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제9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2. 제7항에 따른 노동이사
3.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⑦ 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편의제공
2. 안전부의권,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부여
3.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
4.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
5.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⑨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명 및 노동이사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사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관련 공익단체 및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4.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사 중 1명(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 출자·출연 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노동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서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이사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생략)	제2조(적용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적용한다.	④ ----- ----- -----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 -----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9조(임원) ① (생략)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5항-----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제9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

2. 제7항에 따른 노동이사

3.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신 설>

③ (생 략)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정원이 5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신 설>

<신 설>

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한다)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편의제공

2. 안전부의권,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부여

3.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

4.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

5.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⑨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임명 및 노동이사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의2(이사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기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임원추천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관련 공익단체 및 노동계를 포함한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u>제9조제4항</u>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략)	<u>3.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u> <u>4.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이사 중 1명(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u> <u>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제5항</u>----- ----- ② (현행과 같음)
--	--